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오세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8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5. 30.

발 의 자 : 오세정 · 김영호 · 김정재
최경환^(평) · 이용주 · 안호영
박덕흠 · 김민기 · 김석기
정운천 · 박명재 · 홍철호
서영교 · 송석준 · 변재일
김현권 · 표창원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지사에게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‘화재경계지구’로 지정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과 등 현황을 관리하고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의무만 부여하고 있음. 이에 시·도지사에게 쪽방촌, 전통시장, 노후 건축물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,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화재예방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(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7항).

※ 대구 서문시장 화재('16.11.30.) 관련 대구시 건의사항이며, 18개 시·도 소방본부 의견조사결과 17개 시·도가 찬성함.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”으로 한다.

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·보강 및 설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(消火)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<u>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.</u> 1. ~ 3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제12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계 공무원</u> <u>원으로 하여금 다음 --.</u>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<u>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·보강 및 설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